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 12,



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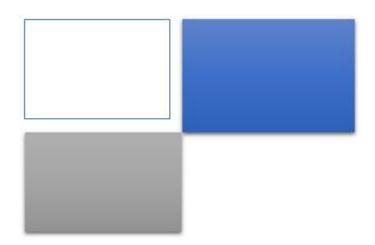
일반행정 분야

·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3
· 2023년 달라지는 지방세 과표 관련 제도 ······ 4
· 제8차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접수 ······ 5
· 4·3 희생자 보상금 2·3차 대상자 접수 ······ 6
· 4·3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접수 ······ 7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8
·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도입9
· 열린 평생학습대학 운영 ······· 10
· 제주형 디지털 메이커 양성 전문교육 본격화 11
· 2023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변경 12
· 2023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변경 12
· 2023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변경 ····· 12 민생경제 활력 분야
민생경제 활력 분야
민생경제 활력 분야 · 탐나는전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앱 신규 설치 안내 ···· 15
민생경제 활력 분야 · 탐나는전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앱 신규 설치 안내 ···· 15 · 2023년 제주형 생활임금 ······ 16
민생경제 활력 분야 • 탐나는전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앱 신규 설치 안내 ···· 15 • 2023년 제주형 생활임금 ····································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시행 ······ 21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22
·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시행 ······ 23
청년지원 분야
· 청년주권회의 신설 및 청년자율예산 시범운영 27
· 제주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구축 28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29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인상 ······ 30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31
미래산업 분야
· 그린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생태계 도입 ······ 34
· 제주형 UAM · 드론 산업 육성 정책 추진 35
· 제주형 UAM · 드론 산업 육성 정책 추진 35 ·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기반 마련 36
·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기반 마련
·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기반 마련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기반 마련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기반 마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44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확대 ······· 45
·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 46
· 보호아동 문화활동비 및 입소아동 정서교육지원비 확대 ····· 47
· 홀로 사는 노인 냉·난방비 확대 지원 ······· 48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단가 인상 ······ 49
· 어르신 누구나 돌봄 '인공지능 케어콜' 시범운영 50
·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행 ······· 51
· 장애수당 급여액 인상 52
· 노인성 질환자 장애인 활동지원 보전급여 지원 53
·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조정54
1차 산업 분야
1차 산업 분야 · 농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
· 농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 57
· 농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 57 ·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 확대 58
 농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 57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 확대 58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무료 지원 기간 연장 59
· 농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

·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 66
·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 67
·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관리사업자 변경에 따른 재발급 신청 ···· 68
·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이용방법 개선69
·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 인상70
· '22년도 설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개시 ······ 71
환경 보전 분야
· 상·하수도 요금 인상 75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 76
·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77
· 동물원·수족관 시설 외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 78
문화・관광・체육 분야
· 제주 작가 대상 수도권 지역 레지던시 작업공간 제공 ······· 81
· 제주 작가들에게 서울 갤러리 작품 전시 제공 82
· 제주관광진흥기금 이차보전 지원 확대 83
·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 84
· 관광업계 대상 맞춤형 홍보 마케팅 지원 85
·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운영 86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조성 87
ᇫᅲᅕᆉᅐᅜᆝ오ᄀᆜᄀᆝᅁᅄᅟᅟᄀᆝᄝᄀᆡᆉᅟᅕᄓᆛ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액 · 지원기간 확대 ······ 88



일반행정 분야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세정담당관 세외수입팀장(710-6901)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고향사랑 기부제가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란?

기반금은 주민 복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제도

□ 주요내용

- o (기부 주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가 아니면서, 제주를 응원 하는 국민 누구나
 - ※ 제주도민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o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 혜택)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기부액의 30% 범위 내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
 - ※ 기부자가 받는 세액 및 답례품 한도(예시)
 - 10만원 기부시 130.000원 혜택(세액공제 100천원, 답례품 30천원)
 - 100만원 기부시 548,500원 혜택(세액공제 248.5천원, 답례품 300천원)
- o (기부 방법) 지정 금융기관(NH농협은행)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향 사랑e음 기부시스템에 접속하여 기부 가능
- (기부금 사용처)
 - 청소년 육성·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사업
- (기대효과) 지역특산품의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금 수입으로 지방재정 확충

□ 시 행 일: '23. 1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가능 (기부액)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혜택)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2023년 달라지는 지방세 과표 관련 제도

세정담당관 세정팀장(710-6881) / 과표팀장(710-6891)

「지방세법」개정으로 `23년부터 무상취득시에 시가인정액을 과표로 적용하는 등 취득세 과세표준체계가 달라지고,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에 따라 의견청취 제도가 시행됩니다.

□ 증여 등 무상취득시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

- o (무상취득)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적용
 - 시가인정액: 평가기간(취득일 전 6개월~후 3개월)내 해당 물건의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단,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적용)
 - *감정가액: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대상과 면적·위치·용도 및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동산의 시가인정액(단, 시가인정액 평가기간 적용 등 차이)
 - 예외: 상속취득은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납세자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선택 가능
- o (유상취득) 신고가액등에서 사실상취득가격으로 적용 (과표특례 등 예외 있음)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 절차 시행

- o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건축물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 o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매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

- (시가표준액 공개 대상) 매년 1월 1일 현재 건축물
- □ 시 행 일: '23. 1월

- ❖ `23년부터 무상취득시 시가인정액 적용 등 취득세 과세표준체계 전환
- ❖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시행

제8차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접수

4·3지원과 4·3총괄팀장(710-8431)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8차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를 '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받습니다.

□ 주요내용

- (신청대상)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자 ※ 기결정된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제외
- (신청시기) '23. 1. 1. ~ 6. 30.
- o (신청장소) 도 4·3지원과, 행정시 자치행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 < 필요 서류> -

1. 희생자(후유장애인)·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 · 희생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다만, 첨부가 곤란한 경우 다음의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 첨부)
 - 희생자의 친족
 -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 ·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2.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수형인)·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 · 희생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다만, 첨부가 곤란한 경우 다음의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 첨부)
- 희생자의 친족
-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 ·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작성한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 한정)

3. 유족 신고만 하는 경우

- · 희생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작성한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 한정)

□ 시 행 일: '23. 1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4·3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8차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접수

4 · 3 희생자 보상금 2 · 3차 대상자 접수

4·3지원과 보상지원팀장(710-8941)

「4・3사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시행('22. 4. 12.)으로 '22년 6월부터 1차 대상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3년에는 2·3차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 주요내용

- (지급대상)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4·3사건법」제2조)
- o (신청대상) 생존희생자의 경우 본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유족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
- (신청기간) '22. 6. 1. ~ '25. 5. 31. ※ 4·3중앙위 결정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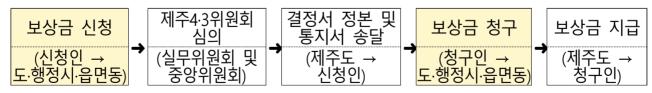
구분	2022년)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一下正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간	2022.6.1.~	2023.1.1.~	2023.7.1.~	2024.1.1.~	2024.7.1.~	2025.1.1.~
기간	2022.12.31.	2023.6.30.	2023.12.31.	2024.6.30.	2024.12.31.	2025.5.31.
인원	2,117명	2,500명	2,500명	2,500명	2,500명	1,703명+ α

※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시점 또는 6차(2025. 1. 1.~5. 31.)에 신청하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840명)의 경우 유족 추가 이후 신청

☞ 4 · 3종합정보시스템(https://peace43.jeju.go.kr)에서 신청순서, 서식,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신청·접수처)
 - (도내거주자) 행정시 자치행정과(4·3지원팀)·읍면동 주민센터
 - (도외·해외거주자) 도 4·3지원과(4·3보상지원팀)

□ 보상금 신청·지급 절차



- ※ 보상금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에게는 보상금 결정서 미발송
- □ **시 행 일: (2**차) '23. 1월 ~ 6월 (**3**차) '23. 7월 ~ 12월

- **❖ 4·3 희생자 보상금 2차**('23.1.1.~6.30.) 및 **3차**('23.7.1.~12.31.) 대상자 신청·접수
- ☞ 보상금 지급 포기 가능하며, 동순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

4·3 희생자의 기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접수

4·3지원과 4·3지원팀장(710-8441)

「4・3사건법」개정에 따라 제적 있는 4·3 희생자의 사망기록 작성·정정 신청을 2021년 7월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희생자와 친생자 사이의 관계를 확인, 형성하는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 주요내용

- (신청사항) 희생자의 친생자임을 확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작성
- o (신청장소) 도, 행정시, 읍면동(관할 주소지)
- (신청대상) 제주4·3위원회에서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제주4·3위원회에서 결정한 실질적 유족

- <근거 법령> '

「4・3사건법」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제주4·3사건 진상 규명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에 관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 3.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

제3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 3.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

□ **시 행 일:** '23. 상반기 중(예정)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조카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신청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

4·3지원과 4·3총괄팀장(710-8431)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및 장제비를 '23년부터 지원합니다.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 * '00년 '07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 결정된 자

-<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u>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u>

-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 ·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명예수당 매월 10만원 및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 명예수당의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
- o (신청시기) '23년 1월부터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

Ξ	구 분	명예수당	장제비	
지	원대상	관련자 본인	기 명예수당을 지원받던 관련자 사망 시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자	
지원	거 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해당없음	
요건	나 이	만 65세 이상	해당없음	
지	원금액 월 10만원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복제 외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 제외(조례 제9조)		

□ 시 행 일: '23. 1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급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도입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장(710-3821)

평생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제도를 도입·운영합니다.

□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란?

 도민들이 본인의 여건에 따라 도내 평생교육기관에서 자유롭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가 제공하는 바우처 카드 형태의 평생교육 학습 이용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1월 ~ 12월 ※ (준비기간) 1~2월, (시행) 3~12월
- o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2,500명
- o (대상선정) 우선지원대상* 선 지원(발급) 후, 신청 접수 순
 - * 우선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년(만19-39세)
- o (지원금액) 1인 35만원

□ 시 행 일: '23. 3월

- ❖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도입
 - **1인 35만원 / 2,500명 발급 <우선발급대상 선 발급 후, 신청접수순>** (우선발급대상) 수급자 중 청년(만19~39세), (일반대상)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열린 평생학습대학 운영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장(710-382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22. 준공)을 거점으로 하는 열린 평생학습 대학을 운영하고 지역적 확산을 위해 도내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과 연계하여 운영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1월 ~ 12월 ※ (준비기간) 1~2월, (시행) 3~12월
- 이 (사업대상) 제주도민
- (교육장소)
 - (본부캠퍼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제주시 서사로 43 소재)
 - (분원) 제주시 외곽지역 및 서귀포시 지역 등 공공기관 및 평생 교육기관 활용 수요응답 지역배달 강좌 운영
- (사업내용) 각종 K-컬쳐, 인문학, 문화예술, 과학, IT·BT 첨단기술 등다양한 분야의 고급 장·단기 교육과정 및 도제식 교육과정 운영 (학기제, 명예학위, 학기별 22개 과정 이상)

□ 시 행 일: '23. 3월

-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거점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
 -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열린 평생학습대학 운영을 통해 체계적 평생교육시스템 도입 및 지역적 확산
 - 각종 K-컬쳐, 인문학, 문화예술, 과학, IT, BT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고급 장단기 교육과정 및 도제식 교육과정 운영 (학기제, 명예학위제, 22개 과정 이상 운영)

제주형 디지털 메이커 양성 전문교육 본격화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장(710-382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혁신교육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 및 디지털트레이닝실을 활용하여 제주형 디지털 메이커 양성을 위한 최첨단 디지털 전문교육을 진행합니다.

□ 주요내용

- o (대 상) 제주도민 3,000여명
- o (운영기간) '23. 1월 ~ 12월
- (교육내용) 그래픽, 게임, 앱 컨텐츠, 4차산업혁명 기술 교육, 디지털
 유통가 양성 교육 등 전방위적 디지털 메이커 양성 교육
- 3D Max, 프리미어,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등 그래픽 컨텐츠 메이커 양성
- Unity, 파이썬 등을 활용한 게임 및 메타버스 컨텐츠 메이커 양성
- Java,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등을 활용한 앱 컨텐츠 메이커 양성
- 음성인식 툴, 알버트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구축 및 AI 딥러닝 교육
- 3D 프린터, CNC 조각기 등 메이커스페이스 활용 모형 메이커 양성
- 청년 취업지원 코딩 알고리즘 전문교육
- 자율주행, PCB 보드 활용교육, 레고 NTX 등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교육
- 개인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 디지털 유통가 양성 교육

□ 시 행 일: '23. 1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신청사 활용 국내 최고수준의 디지털 메이커 양성 교육 본격화

2023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변경

총무과 인재채용팀장(710-6221)

'23년부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일부 직렬에 대하여 <mark>응시자격이</mark>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 9급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현 행	변 경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 ○○. 2월 졸업예정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 ○○. 2월 졸업예정자 -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 (면접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가능

□ 보건 · 환경연구사 경력경쟁임용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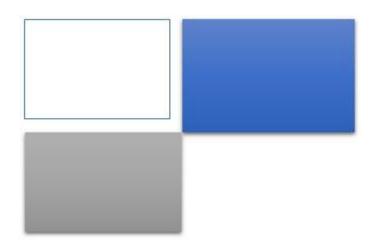
현 행	변 경
(직렬 및 직류별 해당학)을 전공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직렬 및 직류별 해당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9급 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

현 행	변 경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 시 행 일: '23. 1월

- ❖ 2023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변경
- (9급 기술계 고졸(예정)자) 졸업자의 경우 <u>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u>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 (보건·환경연구사) <u>해당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u>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 (9급 운전직)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민생경제 활력 분야

「탐나는전」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앱 신규 설치 안내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장(710-2511)

'23년부터 2단계「탐나는전」운영대행사가 변경됨에 따라「탐나는전」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및 카드등록이 필요합니다.

□ 주요내용

- (추진배경)
 - '23년부터 2단계「탐나는전」운영대행사 변경*으로 탐나는전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필요
 - * (기존) 코나아이(주) → (변경) 나이스정보통신(주)
- (탐나는전 앱 사용방법)
 - ① 신규「탐나는전」앱 다운로드 ② 회원 가입, ③ 카드등록 필요
 - * 신규 앱 오픈(예정): '23. 1. 5.(목) 09:00
 - * 다운로드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스토어에서 "제주 탐나는전" 검색
 - ※ 기존 카드의 고객정보(잔액, 이용내역 등)는 전달되며, 계속 사용 가능
 - ※ 서비스(결제, 취소 등) 중단 기간 : '23. 1. 1.(일) 00:00 ~ 1. 5.(목) 08:59

□ 시 행 일: '23. 1월

- ❖ 2023년「탐나는전」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탐나는전」앱 사용 방법
 ① 신규「탐나는전」앱 다운로드 → ② 회원가입 → ③ 카드등록
- ※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할인 혜택(결제 시 5 ~ 10%) 지원은 2023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2023년 제주형 생활임금

경제정책과 노동정책팀장(710-2555)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자 시행중인 제주형 생활임금제가 2023년 변경(인상) 시행됩니다.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
 - ②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한 근로자
 - ③ 제②호의 기관 및 업체 등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해당 하도급 공사나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
 - *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 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생활임금액) 시간급 11,075원(월 2,314,675원)
 -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시 행 일: '23. 1월

-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변경 시행(공공기관 대상)
 - (2022년 생활임금액) 시간급 10,660원
 - → (2023년 생활임금액) 시간급 11,075원

제주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 본격 운영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지원팀장(710-3071)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폐해 방지 및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착한소비를 통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가 본격 운영됩니다.

□ 제주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란?

○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민·관 협력형 배달앱 으로 민간 배달앱보다 저렴한 수수료(1.5%)로 이용 가능

□ 주요 혜택

〈소상공인〉

- 배달앱 중개수수료: 1.5%
- ㅇ 입점비 및 월 사용료 무료
- ㅇ 광고료 없음

〈소 비 자〉

- o 방문·포장 예약 주문 가능
- ㅇ 각종 할인쿠폰 및 특정일 이벤트 등 소비자 할인
- ㅇ 지역화폐 '탐나는전' 결제 가능

□ 시 행 일: '23. 1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할인쿠폰, 이벤트, 탐나는전 결제 연계 등 '제주형 배달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풍성한 혜택 제공 (할인쿠폰) 첫주문할인, 포장할인, 주말할인, 지류쿠폰, 포인트 적립 등 (이 벤트) 특정일이벤트(설, 추석, 가정의 달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규모 확대 지원

소상공인기업과 경영기술지원팀장(710-2636)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과 자금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금리 상승 충격 최소화 및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 지원을 진행합니다.

□ 사업개요

- o (사업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규모 확대지원
- '20년 수요자부담금리(1.4%) 수준으로 이차보전 확대
- (지원기간) '22. 11월 ~ '23. 6월(8개월간) ※ '23.7월 이후는 공고계획에 따름
- o (사업대상)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존 및 신규 대출자
- o (수요자부담금리) 최대 1.4% <u>※ 1.4% 이하 적용 수요자는 현행금리 적용</u>
- (지원내용)

구 분	현 행
협약 최고금리	3.0% ~ 4.9%
이차보전율	1.7% ~ 3.0%
수요자 부담금리	0.2% ~ 2.4%

	지원(안)				
	22년 현행 유지, 23년은 별도 협약				
보증서 22년 : 1.6%~3.5% 부동산 23년 : 협약금리-1.4%					
	신 용	보증서 · 부동산협약금리평균 -1.8%			
	0.2% ~ 1.4% (신용대출은 대출금리-이차보전율)				

□ 시 행 일: '22. 11월

- ❖ '23년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 지원 (수요자부담금리 1.4%)
 -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자는 기존 약정대로 이자를 부담하고 추가 이차 보전지원액은 도에서 대출자에게 아래와 같이 직접 송금 예정
 - 송금예정시점: '23.3월('22.11.1.~12.31. 이자분), '23.6월('23.1.1.~3.31. 이자분) '23.9월('23.4.1.~6.30. 이자분)

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소상공인기업과 경영기술지원팀장(710-2636)

코로나19 장기화와 신3고(高)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하여 경영안정지원 자금 상환 만기 및 거치기간을 연장합니다.

□ 사업개요

- o (지원사업) 5개 사업
 - ① 경영안정지원자금 3회차 상환 연장
 - ② 경영안정지원자금 분할상환 거치기간 연장
 - ③ '20년 코로나19 피해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 연장
 - ④ '21년 코로나19 피해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 연장
 - ⑤ '21년 집합금지·영업제한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 연장
- (지원대상) 경영안정지원자금(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포함) '23년 만기 도래업체 ※ 분할상환은 '19, '20, '21년 대출자
- o (연장기간) 만기일로부터 l년 ※ 분할상환은 거치기간 1년
- (이차보전율) 2.1%(3회차), 2.5%(특별경영자금·분할상환)※ 협약금리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시 행 일: '22. 12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을 포함한 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 만기 및 거치 기간 1년 연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과 소득지원 강화

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장(710-4441)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0 지워대상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I 유	요건 심사형	1E 60 H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ㅠ 형	선발형	15~69세 (청년은 18~34세)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 120%)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은 취업경험 무관)
II유형		10~34/11)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제한 없음)	무관	무관

0 지워내용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최대 1,954천원 지원(직업훈련 참여시)			
구 직 촉 진 수 당	◆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만원+추가지급(최대 월 40만원) × 6개월			
조기취업성공수당	 I 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수립 후 3개월 내 취(창업)시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정률) □유형(조건부수급자)는 1회 50만원(정액) 			
취 업 성 공 수 당	◆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			

□ **시 행 일:** '23. 1월

- ❖ 구직촉진수당 지원금액 확대(2022년)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 → (2023년) 월 50만원~90만원(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 6개월
 - * 수급자격 심사시 확정된 가구원 중 미성년(만18세이하), 고령자(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
- ◆ 조기취업성공수당 지원금액 확대
 (2022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내 취업 시, 1회 50만원
 → (2023년) 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시행

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장(710-4441)

퇴직 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ㅇ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전문인력
- (참여요건) 수행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수행 업무 관련 「자격기본법」제2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서비스분야 2급 및 단일등급의 자격을 보유할 것(워드프로세스 자격 제외) 등
- (사업내용)
 - 소상공인 컨설팅(1명): 경영컨설팅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 참좋은밥상(6명): 식습관 지도 및 조리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밥상 지원
 - 트래블헬퍼(20명): 관광취약계층 대상으로 여행서비스 지원 및 상담
 - **숲해설체험(4명)**: 노인 및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제주 숲해설, 숲체험, 숲놀이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멘토링사업(12명): 제주의 전문직 퇴직자들의 지역사회를 위한 멘토링 운영

□ 시 행 일: '23. 1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퇴직전문인력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 5개 분야 43명 채용 추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고용센터 고용지원팀장(710-4591)

매출액 · 생산량 감소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 예방과 생계유지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ㅇ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구분	고용유지 조치 실시	지원수준
휴업		
휴직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대규모기업 1/2지원

- 지원기간 : 휴업·휴직 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연도 180일 한도로 지원
- ㅇ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구분	고용유지 조치 실시	지원수준
휴업	[®] 30일 이상 실시, [®]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 노동위원회 승인	
휴직	[®] 30일 이상 실시, [®]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휴직 실시, [®] 근로자 대표 합의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한도 6.6만원) 범위 내

- 지원기간 : 회계연도 관계없이 근로자별 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
- □ 시 행 일: '23. 1월

- ❖ 시외버스 등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 '22.12.31. 종료 예정이던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3.1.1.부터 '23.6.30.까지 6개월 연장

모성보호와 일 · 가정 양립 지원사업 시행

고용센터 고용지원팀장(710-4591)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계안정 도모 및 육아휴직급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여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
- 월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210만원) * 행정예고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지원, 대규모 기업 30일 지원
- ㅇ 육아휴직 급여지원
- 육아휴직 통상임금의 80% (하한액 70만원~상한액 150만원) 지급
- ※ 단,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지급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지원유형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지원대상	우선대상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870만원	만 12개월 이내*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360만원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육아기	기본360만원	월 30만원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인센티브 적용** 480만원	월 4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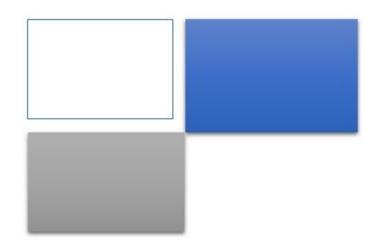
- * 만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시 적용
-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급
-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 시 행 일: '23. 1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구 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전후 급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① 또는 ②) 충족 ① 출산(유산.사신)일에 피보험자격 유지 시 -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일 것 ② 출산(유산.사산)일에 피보험자격 상실 시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일 것	○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 출산전후 휴가기간 피보험자격 계속 유지(원칙)	
급 요 건	지급기간 중 노무 미제공	< 소득활동 허용기준> - 노무 제공을 통한 소득: 월 평균 보수의 15/40 미만(하한 50만원, 상한 150만원) - 자영업을 통한 소득: 월 150만원 미만	<소득활동 허용기준> - 주 소정근로시간 15 시간 미만 - 취업, 자영업을 통한 소득: 월 150만원 미만	
	신청기한	출산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 *)간 월 평균 보수의 100% *출산(유산.사산)일 피보험자격 상실된 경우	휴가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	
급 수 준	상한액	'23년 월 210만원(행정예고)	'23년 월 210만원(행정예고)	
	하한액	[예술인]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월 80만원	최저임금	
지급기간		출산일 전후 9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 2023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401,910(행정예고)



청년 지원 분야

청년주권회의 신설 및 청년자율예산 시범운영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주권팀장(710-3871)

청년주권회의 신설 및 청년자율예산 시범운영을 통해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 청년주권회의 신설

- ㅇ (선정방법) 청년원탁회의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구성
- **(참여인원)** 20명 내외
- **(활동기간)** '23. 2월 ~ '24. 2월(1년)
- ㅇ (주요역할) 청년정책 제안 및 심의, 청년정책 개선 건의 등

□ 청년자율예산 시범운영

- (개 넘) 청년들의 다양한 제안을 당해연도에 추진하기 위해'23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제도
- (추진절차)



※ 연중 사업 발굴 및 추진 가능

□ 시 행 일: '23. 1월

- ❖ 청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 권한을 갖는 청년주권회의가 신설
- ❖ 청년 제안사업을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청년자율예산 시범운영

제주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구축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팀장(710-8861)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하여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사업개요

- o (추진기간) '23. 1월 ~ 12월
- (사 업 량) 제주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 내
- (사업대상) 제주도내·외 청년
- (주요내용)
-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한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청년의 사회 진입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온 오프라인 상담 운영
- 생애주기, 관심분야별 맞춤형 청년정책 정보 안내 및 연결 등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등 청년정책 데이터 공유 및 연계 활성화

□ 시 행 일: '23. 6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분야별 정책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연계 함으로써 청년정책 참여 유입 확대

시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팀장(710-8861)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도내 사회적 고립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추진기간) '23. 1월 ~ 12월
- o (사업대상) 제주도내 고립청년(만 19세 ~ 39세)
- (주요내용)
 -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자립지원, 교육지원, 활동지원, 상담분야 등)
- *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레」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u>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u>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함.

□ 시 행 일: '23. 3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지원을 통해 사회 소속감 형성 부여 및 능동적인 사회진입 유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인상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710-2371)

자립준비청년이 초기사회정착을 위해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을 15백만원 으로 인상합니다.

□ 사업개요

- o (지원대상) 만 18세 이후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아동
- o (사용용도) 주거마련, 취·창업, 대학진학 등 자립지원을 위한 초기 사회정착 비용
- o (지원금액) 1인 15백만원
- 0 (신청방법) 관할 행정시 소관부서
 - (제주시) 주민복지과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시 행 일: '23. 1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인상: (기존) 5백만원 → (변경) 15백만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710-2371)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진출 시, 사회부적응 해소 등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매월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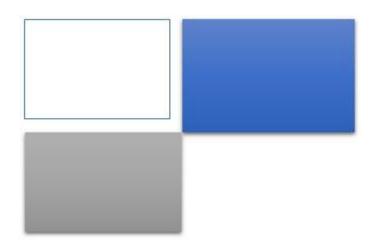
□ 사업개요

- o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 중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o (지원내용) 월 40만원
- ㅇ (지원방식) 매월 20일 자립준비청년 본인 계좌 입금
- o (신청방법) 관할 행정시 소관부서
 - (제주시) 주민복지과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시 행 일: '23. 1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기존) 월 35만원 → (변경) 월 40만원



미래산업 분야

그린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생태계 도입

저탄소정책과 CFI총괄팀장(710-2536)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를 통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9대) 운영 등 수소생태계가 도입됩니다.

□ 그린수소란?

o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제로'인 청정수소를 의미

□ 주요내용

- 0 (생산) 신재생에너지 활용 수전해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
- 3MW급 그린수소 생산기지 운영(1일 1톤 생산가능 시설)
- 국내 최초의 상업용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 ㅇ (보급) 함덕리 그린수소 충전소 운영
- 위 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17-9(함덕 버스회차지)
- 상업운영 : 2023. 3월 이후
- o (활용) 수소(저상)버스 운영
- 함덕-수목원 구간 수소(저상)버스 운영(9대)
- 수소버스 1대가 1km 운행 시 4.863kg의 공기 정화
 - → 10만km 운행 시 성인(몸무게 65kg) 85명이 1년간 숨쉴 수 있는 공기 정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탄소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생산과 함덕리 수소충전소 운영으로 수소 보급 및 수소버스(9대) 운행을 통해 제주형 수소경제 생태계 도입

제주형 UAM · 드론 산업 육성 정책 추진

디지털융합과 드론·UAM T/F팀장(710-4891)

제주 UAM·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인프라 구축, 드론 상용화 서비스 발굴 및 저변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 주요내용

- 제주 드론특별자유화구역(드론전용규제특구) 조성사업
- 도심항공교통(UAM+드론)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 플랫폼 연계 확대
- 드론 물류 운송, 드론 관광·레저 연안안전 모니터링, 비상품감귤 불법출하 단속 서비스 등 드론 상용화 서비스 발굴 및 운영
- 민관협력 드론 서비스 발굴 및 관련 기술 실증 추진
- 규제특구(제도)와 연계한 인프라 유치로 드론산업 활성화 도모
- UAM · 드론 저변확대 및 컨퍼런스 개최
- 2023 전국장애인 드론 재활 캠프: 드론축구 지도자 과정 등 교육 으로 장애인의 드론산업 참여 기회 마련
- 제2회 제주컵 드론축구대회: 드론의 큰 활용분야 중 하나인 레저 활성화로 제주드론산업 저변 확대
- 2023 제주드론·UAM 페스타: 드론·UAM 전시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도민공감대 확산 및 미래신산업 육성 기회 마련
- 제주 국제 UAM·드론 컨퍼런스: UAM·드론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로 정보 및 기술 교류의 장 마련

□ **시 행 일:** '23. 상반기

- ❖ UAM·드론산업 육성과 도민편의 및 안전을 위한 드론특구 사업 본격 추진
- ❖ 제주의 미래신산업으로써 UAM·드론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시작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기반 마련

디지털융합과 디지털뉴딜팀장(710-4821)

뉴스페이스 시대, 대한민국 우주산업 최적지로 부상하는 제주의 지리적 강점과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 우주경제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내용

-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부가가치가 높고, 도민이 직접 수혜를 입는 우주 산업육성 전략 마련
 - * 추진절차: 기본방침 발표('23년 1월) → 기본계획 용역 발주('23년 2월)
- 위성활용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활용
 - 위성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위한 도 국가위성운영센터 국토지리정보원 협업강화
 - 국토위성영상활용 실무위원회* 가입 완료 → 위성산업 민관 네트워크 활용 *(공공)항우연, 해경, 국토연구원 (민간)카카오모빌리티, 한컴인스페이스,쎄트렉아이 등
- 민간 우주경제 거점 기반확보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기업유치
 - 전세계 위성 지상국 서비스 기업 투자 유치 (10,000백만원)
 - 위성 활용 민간서비스 기업 유치 활동 추진
- 도내 산·학·연 연계한 제주형 우주산업 인재육성 추진
 - 도·우주기업·제주대학교 인력양성 협약 체결 추진

□ 시 행 일: '23. 1월

- ❖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 민간 우주기업 유치 ·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환경 조성
- ❖ 우주 거버넌스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발굴, 산·학·연 연계를 통한 우주산업 인재육성 및 민간 우주경제 기반 구축

바이오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기업지원 서비스 향상

미래전략과 바이오산업팀장(710-2601)

2022년 확충된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내 바이오기업(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 청정 기능성 식품센터

- 이 (위 치)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바이오융합센터 2호관)
- (주요기능) 도내 식품기업 대상 건강기능식품 효능분석 및 시제품
 제작 등 기술지원, 기업 ODM, OEM 생산지원 등
- o (문 의)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720-2917)

□ 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 ㅇ (위 치)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2162-2(생물종다양성연구소 내)
- o (주요기능) 미생물 활용 유용균주 기능성 소재연구 및 발효식품, 유산균 화장품 등 시제품 제작, 기업 기술이전 등
- o (문 의)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720-2832)

□ 화장품 원료센터

- ㅇ (위 치)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2162-2(생물종다양성연구소 내)
- (주요기능) 화장품 및 원료기업 대상 원료생산 공정개발 등 화장품
 원료생산에서 완제품까지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
- o (문 의)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720-2364)

□ **시 행 일:** '23. 1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축 인프라를 기반으로 청정바이오 산업을 제주의 대표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바이오기업 지원 서비스 강화

스타트업 대상 지식재산 지원 확대

미래전략과 미래전략팀장(710-4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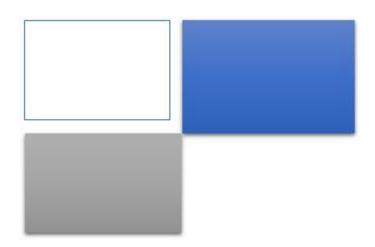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시행하던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이 기업과 더욱 가까워져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개요

- o (지원시기) 연중 수시
- (지원대상)
- 창업 7년 미만, 전년도 매출 100억 미만 스타트업
- o (예산규모) 300백만원(국비 150, 도비 150)
- (지원내용)
- 국내외 IP권리화, 특허조사·분석 컨설팅,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중개, 영업비밀보호 등 IP 서비스 비용 지원
- 필요한 I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소형 바우처(500만원 이내), 중형 바우처(2,000만원 이내) 금액의 70%를 지원(자기부담 현금 30%)
- (접 수 처)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제주시 중앙로 217, 10층 / 064-755-2554)

□ 시 행 일: '23. 1월

- ❖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지원 사업
 - (기존) 한국특허전략개발원(대전, 서울, 세종) 지원
 - → (변경) 각 권역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



보건 · 복지 · 안전 분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시행

방역대응과 현장점검팀장(710-2941)

식품의 판매 허용기한이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시행됩니다.

□ 정 의

-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u>보관방법을 준수</u>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적용대상

o 현행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 ※ 단. 우유류(냉장보관제품)는 2031. 1. 1.부터 적용

□ 소비기한 표시제 상담센터 운영(전국 동일)

- (대표번호) ☎1533-0639
- o (운영시간) 평일 09:00~18:00(공휴일 제외)
- (내 용)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안내 및 질의 응답
 ※ 식품안전나라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업내용 확인 가능
- □ 시 행 일: '23. 1월

- ❖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 식품 안전을 지키면서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환경을 보호합니다.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 운영

방역총괄과 의료수급관리팀장(710-2331)

응급의료 장비를 장착한 응급의료 전용헬기에 의료진이 탑승하여 중증응급환자가 있는 현장(인계점)으로 출동하여 응급처치 후 배치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합니다.

□ 사업개요

- ㅇ (운영시간) 일출 ~ 일몰(연중) / 운항범위: 도내
- o (사업대상) 중증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응급환자
- o (배치병원) 제주한라병원
- (운용체계)

① 환자 → ② 119 신고 → ③ 119구급대원 출동 → ④ 구급대원 119상황실 헬기 요청 → ⑤ 운항 통제실 출동 여부 결정(기상 및 환자 상태 등 확인) → ⑥ 현장 출동 → ⑦ 현장 치료 및 이송 → ⑧ 의료 기관 도착 및 치료



□ 시 행 일: '22. 12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추자도, 한라산 등 취약지역의 중증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인력 충원으로 전 도민 대상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장(710-4361)

맞춤형복지팀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 설치하여 전 도민 대상 통합적인 종합상담을 제공하며, 도내 전체 사회복지관의 인력 충원을 통해 도민 중심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이 강화됩니다.

□ 주요내용

-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100% 설치
 - 맞춤형복지팀 미설치 동(11개소*) 돌봄 전담공무원 배치
 - * 제주시(7개소): 일도1동, 이도1동, 추자면, 봉개동, 우도면, 이호동, 도두동 서귀포시(4개소):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예래동
 - o (주요내용) 복지 외 보건, 주거 등 통합적인 종합상담 수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심 → 일반 주민으로 대상 확대
- [2] 사회복지관 인력 증원을 통해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 확대
 - 도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인력 2명씩 20명 추가 배치
 - 10개 종합사회복지관 ↔ 43개 읍면동 연계 운영
 - ㅇ (주요내용)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 기초생활보장, 노인일자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지원
 - 민·관 통합사례관리 확대 및 공동 사례관리 활성화
 -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주민 조직화 사업
- □ 시 행 일: '23. 1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심에서 일반주민 대상으로 통합적인 종합상담을 수행하고, 지역내 사례관리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운영 등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을 위해 읍면동 중심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710-2816)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 보장은 물론 생계불안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신청)의 선정기준이 완화됩니다.

□ 사업개요

- ㅇ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급여별 선정기준(4인 가구 기준)

구 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	'23년	162만원	216만원	254만원	270만원
인정액	'22년	153만원	204만원	235만원	256만원

○ (달라지는 사항)

- '23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 4인기준 중위소득: ('22년) 512만원—('23년) 540만원, 28만원↑(5.47%)
 -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
- '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액 증가
 - 4인 기준 생계급여: ('22년) 153.6만원—('23년) 162만원, 8.4만원↑(5.47%)
-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21년 10월부터 전면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또는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초과는 제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중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가구 부양의무 제외('22.1월~)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

□ 시 행 일: '23. 1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신청)의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기준액도 상향되어 더 두텁게 지원 예정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확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710-2816)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 복지 등 기존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 실질적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필요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지원 기준이 확대됩니다.

□ 사업개요

- (지원방침)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신속 지원
- 긴급복지지원(국비사업)을 먼저 지원하고, 안될 경우 위기가정지원 사업으로 지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단위: 원)

구 년	1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 전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 ㅇ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 위기 상황이 발생한지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 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 되지 않은 가정 (ex. 실직, 폐업 등 위기 사유로 소득감소 및 생계곤란 등)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시 행 일: '23. 1월

-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확대
- ❖ 의료비 지원수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

결식이동 급식단가 인상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710-2371)

결식 우려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단가를 1식 8,000원으로 인상합니다.

□ 사업개요

- ㅇ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 한부모, 긴급복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이용 등
- (지원내용)
- 학기 중 조식·석식, 토·공휴일
- 방학 중 조·중·석식 지워
- o (지원단가) 1식 8,000원
- o (급식방법) 급식카드(일반음식점 등),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등
- ㅇ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 행 일: '23. 1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아동급식 단가 인산: (기존) 1식 7,000원 → (변경) 1식 8,000원

보호아동 문화활동비 및 입소아동 정서교육지원비 확대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710-2371)

시설입소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문화활동비(용돈)를 매월 초·중·고 3·5·7만원으로 인상하고, 입소아동의 문화체험을 위한 정서 교육지원비가 연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보호아동 문화활동비

- ㅇ (지워대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 o (지원내용)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용돈 지원
 - 초·중·고별 각 월 3·5·7만워
- (지원방식)
 - 시설아동: 매월 시설에서 아동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매월 아동・보호자 계좌로 입금

□ 시설입소 아동 정서교육지원비

- o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에 입소된 아동
- o (지원내용) 체험활동, 견학, 문화체험을 위한 교육비 지원
 - 1인 연 20만원
- □ 시 행 일: '23. 1월

- ❖ 입소·가정위탁 보호아동 문화활동비
 (기존) 초·중·고 월 2·3·4만원 → (변경) 월 초·중·고 월 3·5·7만원
- 사설입소아동 정서교육지원비(기존) 1인 연 8만원 → (변경) 1인 연 20만원

홀로 사는 노인 냉·난방비 확대 지원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장(710-279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1인 85천원에서 100천원으로 확대 지급합니다.

□ 사업개요

- o (지원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주거급여),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
 - ※ 타기관 유사 중복사업 지원대상자 제외(에너지바우처 등)
- o (지원내용) 냉·난방비 1인 100천원 지원
- o (지급방식) 바우처 카드(농협) 지급
- (사용범위) 연탄, 경유, 등유, 도시가스 등 업종※ 예외적으로 전기요금 지원(냉·난방 방식 전기사용·바우처 이용 불가한 자)
- ㅇ (사용기간) 카드발급일 ~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 (선정방법) 독거여부, 타 기관 유사사업 중복지원 등 사실조사 후 행정시에서 최종 지원대상 선정
- o (신청기간) '23년 1월 이후(별도 안내)

□ 시 행 일: '23. 1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홀로사는 노인 냉·난방비 지원 확대 (기존) 연 1인 85천원 → (변경) 연 1인 100천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단가 인상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장(710-2827)

노인 건강증진 및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단가를 인상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저소득 노인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재가 결식 노인에게 식사를 배달하여 제공
- ㅇ (지원대상)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위탁 단체 또는 기관
- (지급기준) 1식 4,500원 → 1식 5,500원
- o (지원시기) 분기별
- 이 (기대효과) 노인 건강증진 및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

□ 시 행 일: '23. 1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단가 인상
 (기존) 1식 4,500원 → (변경) 1식 5,500원

어르신 누구나 돌봄 '인공지능 케어콜' 시범운영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장(710-2791)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기초연금 미수급 홀로 사는 노인대상으로 '23년부터 '인공지능 케어콜' 시범운영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대 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중 안부확인을 희망하는홀로 사는 노인
 - ※ 타기관 유사 중복사업 지원대상자 제외(장기요양서비스 등)
- (지원내용)
 - (인공지능 케어콜) 주2회 안부확인 및 정서적 말벗 지원
 - (전담인력) 통화이력 모니터링으로 안전·건강 위험징후 대상 서비스 연계 조치
- o (수행기관)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o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연중
- □ 시 행 일: '23. 1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초연금 미수급 홀로 사는 노인 대상 "인공지능 케어콜"을 활용한 안부 확인으로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행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710-2831)

장애인복지카드 기능을 개편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교통 복지카드 사용(지하철 무임 탑승)이 가능합니다.

□ 사업개요

- ㅇ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 o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카드(신분증형)에 교통복지카드* 기능 추가
 - *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지하철 무임 태그 탑승 + 버스 유임 태그 탑승
 - 발급지역(장애인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탑승 가능

□ 시 행 일: '23. 4. 1.

- ㅇ '23. 4월 이후에 발급되는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행
 - <u>기존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필요</u>, 단 수도권(서울,인천,충남)에서 발급한 복지카드는 재발급 불필요하고, '23. 4월부터 사용 가능

- ❖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 (기존) 6개 지자체^{*}에서만 교통복지카드 발급 가능하고,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지하철 무임태그 탑승(타지역 지하철 탑승시 무임승차권 발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 → (변경) 전국에서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지하철 무임태그 탑승 가능

장애수당 급여액 인상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장(710-2891)

저소득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수당 급여액이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ㅇ (지급방법) 매월 20일 수급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 (지원내용)
 - 기초수급(재가)・차상위계층: 월 6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월 3만원

□ 시 행 일: '23. 1월

- ❖ 장애수당 급여액 인상
 - 기초수급(재가), 차상위계층: ('22) 4만원→('23) 6만원, 50% 인상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22) 2만원→('23) **3만원**

노인성 질환자 장애인 활동지원 보전급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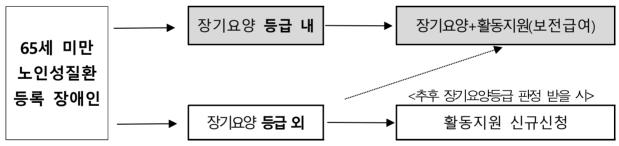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장(710-2891)

'23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 장애인 활동지원 보전급여가 지원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시행: '23. 1월)

□ 사업개요

- o (신청자격)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o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 활동지원(보전급여)
 - (장기요양등급 외) 장애인활동지원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등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 시 행 일: '23. 1월

- ❖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자와 등급외인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을 허용
 - (개정 전) 노인에 해당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불가
 - (개정 후) 장기요양등급 해당자에게 보전급여 실시 등급외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 허용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조정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장(710-3851)

'23년도 도민안전보험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항목 구성과 보장한도 등을 재설계하여 추진됩니다.

□ 사업개요

- (갱 신 일) '23. 4. 1. ('19. 4. 1. 최초 개시)
- ㅇ (보장대상) 주민등록이 제주도로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
- o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한도
- o (보장항목)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등 22개 항목

* 현재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

-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무 보험차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유독성 물질사망
- ▶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 개 물림 사고 사망 / 후유장해 ▶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 헌혈 후유증 보상금 ▶ 감염병 사망 위로금 ▶ 화상수술비 ▶ 대중교통상해부상 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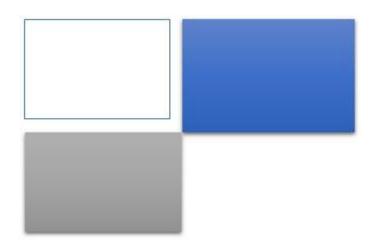
□ 시 행 일: '23. 4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도민 체감형 보장항목 구성 및 보상한도 조정 추진
 - 다양한 보장항목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보장항목 구성

(우선선택) 대규모 피해 우려 또는 피해가 많았던 항목은 다른 항목에 우선하여 선택

(실적 저조 검토) 보험금 실적이 저조한 보장항목은 필요성 등 검토 후 정비 (보장항목 추가 검토)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을 대비한 보장항목 신설 검토



1차 산업 분야

농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장(710-4091)

농민수당 지급 제외 대상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23년부터는 지급 대상 농업인이 확대됩니다.

□ 사업개요

- (지 급 액) 농업인 1인당 연 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전)※ 사용처: 탐나는전 카드 가맹점
- (지급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 신청연도 기준 최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벌금 이상 의 형을 선고 받은 자
 - 지방세 체납자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시 지급 대상)

□ 시 행 일: '23. 1월

- ❖ 농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
 -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농업인도 지급 대상 포함
 - 신청기간 내 지방세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포함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 확대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장(710-3211)

'22년 하반기부터 지급한 어업인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 중 어업분야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어업인수당을 지급합니다. (※ '22. 12월 조례개정)

□ 사업개요

- (지 급 액)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전)※ 사용처: 탐나는전 카드 가맹점
- (지급대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업인으로서 신청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어업분야 직장 가입자 대상 포함)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o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 행 일: '23. 1월

- ❖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 확대
 - (기존) 직장가입자 지급 제외 → (변경)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지급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무료 지원 기간 연장

동물방역과 수의정책팀장(710-2661)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24년 12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칩 및 수수료 무료 지원 기간을 연장합니다.

□ 사업개요

- (등록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는 희망)
- ㅇ (등록방법)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등록 대행기관 방문
 - 등록대행기관*: 69개소(제주시 53, 서귀포시 16)
 - * 동물등록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검색 가능
- o (지원유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칩 및 등록수수료 무료
- ㅇ (의무위반)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 시 행 일: '23. 1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내장형 동물 등록칩 및 등록 수수료 지원(무료) 기간 연장
 (기존) '22. 12월까지 → (변경) '24. 12월까지 연장

실외견(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 대상 지역 확대

동물방역과 수의정책팀장(710-2661)

읍면 지역 실외견(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 예방으로 유기견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시행하고 있는 중성화 수술비 무료 지원을 동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 사업개요

- ㅇ (사업대상)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 실외견(마당개)
 - 기존 읍·면 지역 대상에서 읍·면·동 지역으로 사업 지역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우선순위 지원
- o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읍면 거주자) 및 시청 축산과(동 지역 거주자)
 - 공고 기간 내 방문 접수 후 신청서 작성 등
 - ※ 실내 사육 등 현장 확인 결과 대상자 선정 불가 사유 확인 시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 '23년 세부계획 수립에 따른 신청접수 장소·방법 등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23. 1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대상지역 확대(기존) 읍면 지역 실외견 → (변경) 읍면동 지역 실외견으로 확대

제주마 등록 규정 개정 및 종부서비스센터 운영 확대

축산진흥과 마필연구팀장(710-7941)

제주마 재등록, 씨수말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및 전자마이크로칩 규격 일원화를 통해 제주마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축산진흥원 내 종부서비스센터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농가 민원 편의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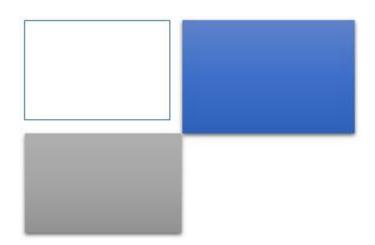
□ 사업개요

- (제주마등록관리 규정 개정)
- 변경등록: (당초) 미필 24개월령 도달할 때 등록증 변경 의무화 → (변경) 삭제
- 씨수말 지정: **(당초)** 고등등록 및 위원회 심의 의무화 → **(변경)** 삭제
- (제주마등록 전자칩 규격 변경)
- (당초) 10자리 칩체계(알파벳포함) → (변경) 15자리 국제표준 칩체계(숫자)*
 * 동물개체식별 코드구조로 총 15자리(국가코드 3 + 개체식별코드 12)
- (제주마 종부서비스센터 운영 확대)
- **(당초)** 평일(오전, 오후), 토(오전) → **(변경)** 평일(오전, 오후), 토,일(오전)

□ 시 행 일

- (제주마등록관리규정 개정) '23. 2월
- (제주마 전자마이크로칩 번호 개선) '23. 1월
- (축산진흥원 종부서비스 운영 확대) '23. 2월

- ❖ 제주마 등록 규정 개정 및 민원 편의 제공
 - 제주마등록관리 규정 개정 → 등록절차 간소화
 - 전자마이크로칩 개선 → 제주마 인식오류 최소화 및 관리체계 구축
 - 종부서비스 운영확대 → 민원 편의개선 및 제주마 농가의 관리비 절감



주거·교통 분야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장(710-2691)

'23년부터 반지하 및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하여 공공임대 또는 민간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개요

- ㅇ (지원대상) '23년 1월 1일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① (공공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반지하,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② (민간임대) 반지하, 컨테이너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민간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심사^{*}를 받은 자 * 최대 5천만원, 무이자, 2년 만기일시상환(최장 10년 연장)
- o (지원내용) 이주비(이사비·생필품 구입비) 40만원 지급(1회)
- (신청기간) 연중
- o (신청방법) 이주한 주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수시)
- ㅇ (지급방법) 자격 검증 후, 본인명의 통장으로 실비 지급(1회)

□ 시 행 일: '23. 1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반지하,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또는 생필품 구입비 최대 40만원 지원

주거급여 사업 지원 확대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장(710-2691)

그동안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해왔던 주거급여 사업이 기존 중위소득 기준 46%에서 47%로 확대됩니다.

□ 사업개요

- (대 상) 저소득 자가·임차가구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임차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
 - 수선유지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청년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19세~30세 미만 미혼자로 취학 ·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자
- (사업기간) '23. 1월 ~ 12월
- o (예 산 액) 32,930백만원(국비 29,637 / 도비 3,293)

□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2년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23년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 □ 시 행 일: '23. 1월

- ❖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6% → 47%로 확대
-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장(710-2691)

주거 취약계층인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 하고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o (지원대상)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도민
 - 신혼부부 가정: 혼인신고일이 사업 공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자녀출산 가정: 자녀출산일이 사업 공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지원금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20만원) 지원
 ※ 단, 다자녀·장애인(중증)·다문화 가정인 경우 0.5% 가산(최대 160만원) 지원
- (대상 임차주택)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 시 행 일: '23. 1월

-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20만원 지원
- ※ 다자녀·장애인(중증)·다문화 가정인 경우 0.5% 가산(최대 160만원) 지원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장(710-2691)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정에 주거임차비를 지원하여 질 높은 출산환경 및 주거자립 기반을 도모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1년 1월 1일부터 **둘째자녀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정** 으로서, 출산(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출생(입양)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생신고가 되어야 하며, 도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 입양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 (지원금액) 연 1회 280만원 지급 (5년간 총 1,400만원)※ 소득기준 없음/보편적 지원
- (제외대상) 유주택자, 「신혼부부 주택전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중복 신청자 등

□ 시 행 일: '23. 1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기존) 지원금 연5회 지급(1월, 4월, 7월, 10월, 12월)
 → (변경) 지원금 연4회 지급(3월, 6월, 9월, 12월)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관리사업자 변경에 따른 재발급 신청

대중교통과 운송지원팀장(710-4331)

'23년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관리 사업자가 제주은행에서 <mark>농협</mark>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교통복지카드란?

- o (발급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 o (혜 택) 제주도내 버스요금 면제(급행버스, 공항리무진 제외)

□ 재발급 방법

- (배 경)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관리 사업자 변경(제주은행→농협)에 따라 **카드 재발급 신청** 필요
- o (대 상 자) 85천여명(70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 (신청기간) '22. 12. 12. ~
- o (장 소) 도내 모든 농협 영업점(143개소) ※ 본인 방문 신청
- ㅇ (구비서류) 신분증, 증명사진 1매, 도장(또는 서명)
 - ※ 장애인, 국가 유공자, 의상자 등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및 대상자확인증명서 등
- (불편 및 혼선 민원 최소화 방안)
 - 기존 제주은행 카드 및 농협 혼용 사용: '23. 1월 ~ 2월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버스 탑승 일시 허용: '23. 1월 ~ 2월
- □ **시 행 일:** '23. 1. 2.

- ◆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관리 사업자(발급기관) 변경 (기존) 제주은행 → (변경) 농협
- ❖ 제주교통복지카드 이용 대상자는 도내 농협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필요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이용방법 개선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장(710-2451)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관리사업자가 농협으로 변경되고, 연간 카드이용방법이 금액 차감제(1회 15,000원, 1일 2회, 연 168,000원 내)로 변경됩니다.

□ 사업개요

- 이 (대상자) 도내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 ㅇ (운영방식) 버스요금 감면 제주교통복지카드 이용
- (지원사항)
 - (기 존) : 1회 7,000원, 연 24회(횟수 차감)
 - ※ 기존 제주은행 카드는 '22.12.31.까지 혜택 요금 지원
 - (변 경): 1회 15,000원內, 1일 2회, 연 168,000원(금액 차감)
 - ※ 이용방법 예시
 - ① 택시요금 4,000원씩 결제 시 연 42회 이용 가능
 - ② 택시요금 10,000원 결제 시 1회 결제잔액 5,000원(15,000원 10,000원) 소멸되지 않고 연말까지 사용 가능

□ 시 행 일: '23. 1. 2.

- ❖ 2023년부터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사업 주관사가 농협으로 변경
 - 도내 143개 농협지점에서 카드 재신청 필요(제주교통복지카드)
- ❖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방법 변경(기존) 횟수 차감제 → (변경) 금액 차감제
 - 1회 15,000원, 1일 2회, 연 168,000원 내에서 사용 가능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 인상

저탄소정책과 전기차산업팀장(710-2651)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 정상화에 따라 '22. 9. 1.부로 환경부의 충전요금 인상이 적용되어 도에서 구축한 충전기의 충전 요금이 인상됩니다.

□ 주요내용

- 전기차 충전기 충전요금 인상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 290원/Kwh → **320원/Kwh**(50kw기준), **340원/Kwh** (100kw이상)
 - ※ 제주의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 등 도민경제부담을 고려하여 충전요금 인상을 '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참고) 환경부 및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

- 50kw기준: **324.4원/Kwh**, 100kw이상: **347.2원/Kwh**

□ 시 행 일: '23. 1월

- ❖ 제주특별자치도 구축 전기차 충전기 충전요금 인상
- **290원/Kwh** → **320원/Kwh**(50kw기준), **340원/Kwh**(100kw이상)

'22년도 설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개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교통민원팀장(710-8930)

'22년도에 설치된 도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75개소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장비 84대가 '23년 4월 17일부터 본격 운영되어 도민여러분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22년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현황 (75개소 84대)

(단위:대)

계	도로종류		단속내용		지역별		
	어린이보호	노인보호	일반	신호과속	과속	제주시	서귀포시
84	67	7	10	39	45	56	28

□ 세부운영계획

- o (운영개시) '23. 1. 16.(월) ~ 4. 16.(일) 안정화 작업, 계도장 발송 등
- o (단속개시) '23. 4. 17.(월)부터 본격 단속
- o (운영시간) 24시간 상시 운영
- o (단속내용)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위반) 및 제17조 제3항(속도위반)
- (과태료 부과기준) [붙임] 참조
- □ 시 행 일: '23. 4. 17.(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도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본격 운영 개시

【붙임】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 위반)

구분	차종	과태료	범칙금	벌점
일반도로	승용	7만원	6만원	15
월민도도 	승합	8만원	7만원	15
보호구역	승용	13만원	12만원	20
(어린이,노인)	승합	14만원	13만원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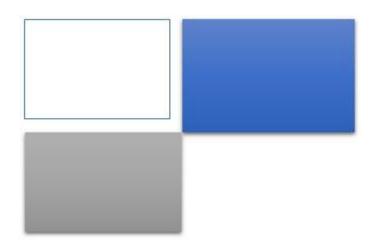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별표7)

구분	초과속도	차종	과태료	범칙금	벌점
	201 /1- 이후	승용	4만원	3만원	-
	20km/h 이하	승합			
	201,00 /b 401,00 /b	승용	7만원	6만원	15
일반	20km/h ~ 40km/h	승합	8만원	7만원	
도로	41 km /b COkm /b	승용	10만원	9만원	20
	41km/h ~ 60km/h	승합	11만원	10만원	30
	61km/h ~ 80km/h	승용	13만원	12만원	60
		승합	14만원	13만원	
	20km/h 이하	승용	7만원	6만원	15
		승합			
보호	20km/h ~ 40km/h	승용	10만원	9만원	30
구역	ZOKITI/TI 19 40KITI/TI	승합	11만원	10만원	30
(어린이, 노인)	441 // 601 //	승용	13만원	12만원	60
	41km/h ~ 60km/h	승합	14만원	13만원	60
	Calum the OLAH	승용	16만원	15만원	120
	61km/h 이상	승합	17만원	16만원	120

-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는 승합, 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를 말한다.
- 08:00~20:00 사이 보호구역 내 위반건은 보호구역 과태료 기준으로 부과하고, 그 외의 시간대는 일반도로 과태료 기준을 따른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39 『과태료의 감경기준』

- 9. 보호구역 내 08:00~20:00 법 제17조 제3항(과속) 제한속도 20km/h 미만으로 위반한 경우 = 원금액 과태료 70,000원 20%감경한 56,000원 부과
- 10. 일반도로에서 법 제17조 제3항(과속) 제한속도 20km/h 미만으로 위반한 경우 = 원금액 과태료 40,000원 20%감경한 32,000원 부과
- 위 2가지 사례 외 자치경찰단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건 감경없이 원금액 부과



환경 보전 분야

상·하수도 요금 인상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경영관리팀장(750-7730)

'23년 1월 납부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됩니다. 요금은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투자에 사용됩니다.

□ 주요내용

○ 상수도

(단위: 원,㎡) **이하수도**

(단위: 원,㎡)

구분 월 사용량 업종별		현행	2023년
가정용	톤당	490	510
	0-20	780	820
일반용	21-100	1,640	1,720
	101이상	2,630	2,760
	0-200	790	830
대중탕용	201-500	1,410	1,480
	501이상	1,790	1,880
농수축산용	0-30	440	460
및	31-100	460	480
산업용	101이상	490	510

구분 업종별	월 사용량	현 행	2023년
가정용	톤당	500	600
	0-20	520	620
일반용	21-100	940	1,130
	101이상	1,730	2,080
	0-200	640	770
대중탕용	201-500	710	850
	501이상	820	980
산업용	토다	730	880

□ 시 행 일: '23. 1월

- ❖ '23년 1월 납부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
 - (상수도) 5% 인상 (하수도) 20% 인상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장(710-6031)

'22. 11. 24.일부터 도내 전지역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추가 확대 품목에 대하여 1년동안 계도기간 적용

□ 주요내용

- o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o (대 상)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22종
 - 장소: 영업장 내 (제외: 배달 · 포장 및 테이크아웃 등)
- ㅇ (업종별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 용품	준수사항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종이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무상제공 금지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제외: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칫솔·치약, 샴푸·린스	무상제공 금지
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사용억제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
도·소매업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사용억제
금융·부동산광고· 기타교육기관· 등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사용억제

- o (위반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 □ **시 행 일:** '22. 11. 24.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생활환경과 환경지도팀장(710-4111)

'23년부터 도내 전지역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됩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이전에 설치한 조명은 '26. 1. 1.일부터 적용

□ 주요내용

- o (조명환경관리구역) 및 공해 발생 및 우려지역을 지정·관리하는 것
- (대상조명)
 -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
 - 광고조명: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 장식조명: 건축물(2,000㎡이상 또는 5층 이상), 숙박·위락시설, 교량 등

○ (용도지구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

구 분	정 의	용도/토지이용현황
제 1 종	빛공해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우려가 있는 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녹지지역
제 2 종	빛공해가 농림수산업의 및 동·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생산녹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제 3 종	빛공해가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제 4 종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	상업지역

○ (용도지구별 빛방사허용기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 1]
-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자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및 개선명령

□ 시 행 일: '23. 1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용도지구별 빛방사 허용기준에 맞는 조명시설 설치

동물원·수족관 시설 외 살아있는 아생동물 전시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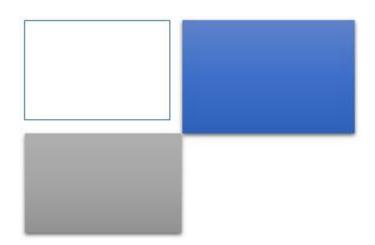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장(710-6071)

'23년 12월 14일부터 「야생생물법」개정('22.12.13)으로 동물원·수족관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므로 야생동물 전시자는 '23년 12월 13일까지 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도개요

- (주요내용)
 - 동물원 및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
- 0 (예외) 전시가 가능한 경우
 - 「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 「수산생물질병법」에 따른 수산생물,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생물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 추후 규정 예정(~'23.12)
 - 판매, 수입, 생산업으로 허가받은 시설 ※ 추후 규정 예정(~'25.12)
- (유예)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 전('23.12.13.)까지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도에 신고한 경우 전시 금지를 유예(~ '27.12.13.)
 - *「야생생물법」공포 당시('22.12.13.) 이미 영업하고 있는 자만 해당
 - 신고주체: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관광농원, 카페 등)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자
 - 신고방법: 법 시행일 전('23.12.13)까지 도에 신고
 - 신고사항: 전시 야생동물 종 및 개체수, 시설 소재지, 대표자 등
 - ☞ 신고한 야생동물에 한정하여 '27.12.13까지 야생동물 전시 가능
- □ 시 행 일: '23. 12. 14.

- ❖ '23.12.14.부터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 ❖ 야생동물 전시자는 법 시행 전('23.12.13)까지 도에 신고



문화·관광·체육 분야

제주 작가 내상 수도권 지역 레지던시 작업공간 제공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장(710-3416)

제주지역 작가 육성 및 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외지역 작가들과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레지던시 작업공간을 제공합니다.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2023년 제주 작가 레지던시 파견사업
- o (위 치) 가나아트파크 2아틀리에(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6-1번지)
- o (규 모) 29평 ~ 43평(5개소)
 - ※ 각 호실별 욕실 및 싱크대 구비
 - ※ 작업공간만 무상 임대하며, 체제비 등 각종 실비는 본인 부담
- o (**입주자격**) 제주 지역작가를 우선
 - 제주 지역에서 출생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제주 지역 대학(원)의 미술 관련 학과를 재학 또는 졸업한 자
 - 공고일 현재 제주에 2년 이상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입주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입주기간 활동계획서, 작가 경력서, 제주지역 예술가 입증서류 1부(지부 회원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학교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포트폴리오 등
- □ **시 행 일:** '23. 2월(참여작가 공고)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제주지역 작가들이 도외 지역 작가들과 창작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레지던시 작업공간 3개에서 5개 확대 제공

제주 작가들에게 서울 갤러리 작품 전시 제공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장(710-3416)

제주 작가들에게 서울지역에서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개요

- o (위 치) 인사아트센터 지하전시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1-1)
- (규 모) 총 115평
- o (사업기간) '23. 1월 ~ 12월
- **(사업예산)** 300백만원
- o (주요내용) 서울전시관(인사아트센터) 전시 공간 무료 제공
 - 예술인 선발: 문화정책과에서 공모 후 선발
 - ※ 1회 2명의 작가가 2주간 전시 가능(연 40여명 전시 예정)
- o (대관자격) 제주 지역작가 우선
 - 제주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제주 지역 대학(원)의 미술 관련 학과를 재학 또는 졸업한 자
 - 공고일 현재 제주에 2년 이상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자
- □ **시 행 일:** '23. 1월(참여작가 공모)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제주 미술작가들이 서울지역에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인사동에 위치한 제주갤러리(115평) 운영

제주관광진흥기금 이차보전 지원 확대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장(710-3311)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한 관광사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요자부담금리 한시적 인하를 통한 이차보전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 사업개요

- ㅇ (지원내용) 융자 추천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신용·부동산 담보 2.8%, 보증서 담보 1.85% 지원
- o (융자종류) 경영안정자금, 시설(개·보수)자금
- o (지원대상) 제주관광진흥기금 기존 융자 사업체 및 신규 융자 사업체
- o (융자조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융자금리)

기존

분기별 변동금리 (매분기 기재부 발표 공자금리에서 0.75% 우대금리 적용

변경

1.4% 고정금리 (적용기간: ~ '23. 6. 30)

- ㅇ (지원방식) 이자차액분(변동급리-1.4%)에 대해 사후 정산 지급
- ※ 예시) 수요자금리* 2.69%('22. 4분기) 1.4% = 1.29% 추가 지원(분기별 지급)

 \Rightarrow

* 수요자금리('22기준): 1.35%(1분기), 1.51%(2분기), 2.45%(3분기), 2.69%(4분기)

□ 시 행 일: ~ '23. 6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관광사업체 수요자부담금리 인하(기존) 분기별 변동 → (변경) 1.4% 고정금리 적용 (~ '23. 6. 30까지)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관광정책과 관광산업팀장(710-3341)

디지털 사회 속 도내 여행업체 자생력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구축부터 기능개선 지원까지 단계별 디지털 전환 지원을 본격 시작합니다.

□ 사업개요

- ㅇ (사업내용) 홈페이지 구축 및 업그레이드 지원 등
 - 신 규 구 축: 홈페이지 미비업체 대상 홈페이지 구축 지원
 - 기 능 개 선: 홈페이지 보유업체 대상 홈페이지 기능개선 지원
 - 디자인지원: 홈페이지 디자인 제작 지원
 - 교육·자문: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o (지원대상) 도내 본점을 둔 여행사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지원금액) 홈페이지 구축 업체당 최대 5,000천원
 홈페이지 기능개선 업체당 최대 10,000천원
 디자인 제작 지원 총 35,000천원 범위 내
 ※ 상황에 따라 업체별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시 행 일: '23. 4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 지원범위 확대(기존) 홈페이지 구축 → (변경) 홈페이지 구축 및 기능개선 지원

관광업계 대상 맞춤형 홍보 마케팅 지원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장(710-3391)

제주관광업계 온라인 마케팅 홍보 지원을 통한 제주관광 마케팅 수단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사업

- 단체 관광객 유치 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제주도에 본점을 둔 여행업체
- (주요내용) 기획 여행상품(별도 선정) 인센티브 지원
- ㅇ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지원
- (지원대상) 제주도에 본점을 둔 여행업체(관광사업체)
- (주요내용) 온 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및 국내 판촉활동비 일부 지원
- ㅇ 메타버스 활용 제주관광사업체 지원
-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관광사업체
- (주요내용) 메타버스 콘텐츠 홍보 지원
- 제주관광 홍보 영상 등 제작 지원
- (지원대상) 제주도에 본점을 둔 여행업체
- (주요내용) 여행상품 홍보영상 제작 지원
- ※ 상기 사업의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시 행 일:** '23. 3월 (지원 사업별로 공고시점 상이)

- ❖ 도내 관광사업체 홍보 마케팅 지원 다각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제주관광의 경쟁력 확보
 - ※ 지원 세부사항은 제주도청 및 제주관광협회 홈페이지 참조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운영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장(710-3311)

문화관광해설사의 기존 활동 인원 감소와 신규 수요 발생에 따라해설사 신규 양성교육을 통해 질 높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기 간) '23. 4월 ~ 6월
- o (장 소) 제주관광대학교 평생교육원
- (교육인원) 40명
- o (교육기관) 제주관광대학교
- (사업비) 50,000천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강사료, 교재비 등 인쇄비, 현장학습 차량임차비 등
- o (교육과정) 100시간(이론교육 50시간 + 실습 50시간)
 - 교육내용: 기본소양, 지역문화역사, 해설안내기법, 현장실습 등
 - 교육시간: 1일 6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가능
- (해설사 배치)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수료 → 3개월 실무 수습
 - → 해설사 자격부여 및 배치

□ 시 행 일: '23. 4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제주의 역사·문화·관광의 가치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널리 알리고자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과정 진행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조성

카지노정책과 카지노관리팀장(710-8811)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산업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 등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을 도민사회에 제대로 알리고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사업개요

- 제주 카지노업 상생협의회 운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
-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대학교, 도내 카지노업계 등 참여
- 카지노 분야 제도개선 사항 및 지역 상생 발전사업 발굴
- 제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정책 홍보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카지노 정책 홍보를 위한 영상 홍보
- 읍・면・동, 관광협회 등 대상 카지노 홍보물(리플릿) 배포
- ㅇ 카지노 도민 인식 조사를 포함한 카지노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 지역상권과 연계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마케팅 활성화 방안 등 마련

□ 시 행 일: '23. 1월

- ❖ 제주 카지노업 산·관·학 협의체 운영
-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대학교, 제주상공회의소 등 참여
- ❖ 새로운 방향의 카지노 정책 홍보 추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액·지원기간 확대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장(710-3451)

'23년부터 취약계층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액이 월 8.5만원에서 월 9.5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기간 또한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됩니다.

□ 사업개요

- o (사업기간) '23. 1월 ~ 12월
 - '23년도 전국 동시모집기간 종료('22. 12. 8. ~ 22.)
 - 스포츠강좌 지원대상자 추가 모집 예정('23. 1월 ~)
- o (지원대상) 취약계층 및 등록장애인
 -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 5 ~ 18세 유·청소년
 - 장 애 인: 만 19 ~ 64세 장애인※ 수급자격 및 장애중증도 등에 따른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액 인상 및 지원기간 확대
 - 지 원 액: **(기존)** 월 8.5만원 → **(변경)** 월 9.5만원
 - 지원기간: **(기존)** 10개월 → **(변경)** 12개월
- □ 시 행 일: '23. 1월

-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액 인상 및 지원기간 확대 (기존) 10개월간 월 8.5만원 상당의 스포츠 강좌 지원
 - → (변경) 12개월간 월 9.5만원 상당의 스포츠 강좌 지원